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8
----------	-------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김 윤 · 김우영 · 백혜련
한준호 · 이인영 · 문대림
박용갑 · 문진석 · 이광희
진성준 · 박 정 · 김남희
임미애 · 이수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

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회계는 자율계정 및 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별 필수의료에 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이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입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2. 「관세법」에 따라 담배 등(「관세법」 별표 제4부제24류를 말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 나.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
 - 다.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사업
 - 라. 그 밖에 시·도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2.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8조(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15
2.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

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경비

5.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 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
6.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7.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
8.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
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55
2. 「관세법」에 따라 담배 등
(「관세법」 별표 제4부제24
류를 말한다)에 대하여 부과
되는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
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
외한 금액
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
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
5.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
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
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40
2. 「관세법」에 따라 담배 등
(「관세법」 별표 제4부제24
류를 말한다)에 대하여 부과
되는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
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
외한 금액
3.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부
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
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
6.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나.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

다.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 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사업

라. 그 밖에 시·도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

제28조(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원에 필요한 경비

3.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경비
5.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액의 100분의 15

2.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②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경비
 5.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 지
역필수의료 정책 기반의 구축
에 필요한 경비

6.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7.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
리금의 상환

8.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
에 필요한 경비